보험 약관

무배당 THE 투명한 변액보험(거치형)

Cigna. 라이나생명

무배당 THE투명한 변액보험(거치형) 약관목차

<<가입자 유의사항>> 4
<<주요내용 요약서>> 6
<<보험용어 해설>> 8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9
제 1 조 【목적】 9
제 2 조 【용어의 정의】 9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11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11
제 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1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1
제 6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12
제 7 조 【보험금의 청구】 12
제 8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2
제 9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2
제 10 조【주소변경통지】 13
제 11 조【보험수익자의 지정】 13
제 12 조【대표자의 지정】 13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3
제 13 조【계약전 알릴의무】 13
제 14 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13
제 15 조【사기에 의한 계약】 14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4
제 16 조【보험계약의 성립】 14
제 17 조【청약의 철회】 14
제 18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5
제 19 조【계약의 무효】 15
제 20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16
제 21 조【계약자적립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16
제 22 조【보험나이 등】 17
제 23 조【계약의 소멸】 17
제 24 조【계약유지보장】 17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17
제 25 조【기본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8
제 26 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18
제 27 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18
제 28 조【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9
제 29 조【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9
제 30 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20

제 6 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20
제 31 조【계약자적립금의 계산】 20
제 32 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20
제 33 조【펀드의 유형】 20
제 34 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22
제 35 조【계약자의 초과적립금 자동이전 선택】 23
제 36 조【계약자의 펀드 자동재배분 선택】 23
제 37 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23
제 38 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23
제 39 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4
제 40 조【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24
제 41 조【특별계정의 폐지】 24
제 42 조【결산사항의 통지】 24
제 7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25
제 43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25
제 44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25
제 45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25
제 46 조【해지환급 금】 25
제 47 조【중도인출】 25
제 48 조【스마트플랜서비스】 26
제 49 조【보험계약대출】 27
제 50 조【배당금의 지급】 27
제 8 관 분쟁의 조정 등 27
제 51 조【분쟁의 조정】 27
제 52 조【관할법원】 28
제 53 조【소멸시효】 28
제 54 조【약관의 해석】 28
제 55 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28
제 56 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28
제 57 조【개인정보보호】 28
제 58 조【준거법】 28
제 59 조【예금보험에 따른 지급보장】 28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30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30
(별표 3) 재해분류표 31

<<가입자 유의사항>>

<< 가입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변액보험

- 이 보험계약은 변액보험으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변동됩니다.
- 보험차익(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 보험료에 포함된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의 규모, 중도인출 및 월공제액 미납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 월공제액은 본문 설명을 통해 반드시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세이프 코스피원자재형 및 스마트&세이프 코스피항셍형 펀드를 선택한 경우, 적립금자동보존전략(Daily Preservation)을 사용하여 위험자산의 가격 변화와 수익률 변동성 및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비율을 조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펀드수익률이 상승하는 경우에 위험자산의 편입비율을 늘리고 펀드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에 안전자산의 편입비율을 늘립니다. 다만,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운용전략의 특성으로 인해 안전자산에 100% 투자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세이프 코스피원자재형 및 스마트&세이프 코스피항셍형펀드의 경우 운용특성으로 인해 장기간 펀드순자산이 안전자산에 100% 투자되는 경우에 계약자는 다른 펀드로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계약에서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부가된 특약에 한하여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 및 계약유지보장 보증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할 때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납입한 보험료중 보험 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와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계약유지보장 보증비용 포함)을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을 말하며 사망보험금이 사망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의 증가로 인하여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주요민원사항

유형	변액보험의 원금손실관련
내용	K씨는 모집인으로부터 변액보험을 안내 받고 상품 가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가입함 청약서에 서명 이후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납입되었고 약관, 증권, 상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정상적으로 전달 받았으나, 수개월이 경과하여 우연히 청약관련 중요 서류를 다시 살펴보던 중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었음을 깨닫고 민원을 제기함 당시 K 씨는 모집인으로부터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형 상품임을 안내 받았으나, 청약 당시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완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함(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인 줄 알았다고 함)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상품은 투자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보험금 및 환급금이 증가하나, 투자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는 보험금 및 환급금이 납입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입니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위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거나,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취소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공제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7.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유지보장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경우 계약자 적립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해당월의 월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고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무배당 THE투명한 변액보험(거치형)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이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이 보험상품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변액보험으로서 보장기능이 있는 장기투자 목적의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입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 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4.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5.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1.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2.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3.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④ 기간 및 날짜 관련 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⑤ 이 외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

1. "변액보험"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중에 사망보험금 및 계약자적립금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일반계정"이라 함은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동조 동항 3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합니다.

【일반계정(General Account)】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은 제외

3. "특별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

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특별계정(Separate Account)】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4. "펀드"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5.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제49조(보험계약대출)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부리 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 다만,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계약자적립금에서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자적립금】
-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보험월계약해당일(이하 "월계약해당일"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7. "기본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시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8. 추가납입보험료"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경과 이후부터 기본보험료를 초과하여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기간 중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중도인출금액의 합계

다만, 제47조(중도인출) 또는 제48조(스마트플랜서비스)에 따른 인출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는 상기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스마트플랜서비스"라 함은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주기로 정해진 금액만큼 중도인출을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월공제액"이라 함은 월계약해당일의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유지보장 보증비용(선택시)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계약해당일+제1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기본보험료 납입시에는 제27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의 제3항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11.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에 계약자 적립액을 인출(스마트플랜서비스 포함) 할 경우 제47조(중도인출) 제6항, 제48조(스마트플랜서비스) 제6항에 따라"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12.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을 말하며 사망보험금이 사망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동조 동항 제11호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3. "계약유지보장"이라 함은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공제액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제24조(계약유지보장)의 제3항에 따른 조건에 충족할 경우 계약을 실효시키지 아니하고 유

지시켜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해 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14. "계약유지보장 보증비용"이라 함은 제24조(계약유지보장)에 따른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15. "위험보험료"라 함은 보험기간동안 사망보험금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과 계약자적립금의 합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위험보험료가 증가하며 이로 인하여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16.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17. "운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18. "투자일임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19.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20. "사무관리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항 제11호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28조(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중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미공제된 월공제액을 사망보험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4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제12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

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6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3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신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신합니다.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기본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기본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거나,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제 1 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9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계약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승낙을 한 경우에는 감액되는 보험가입금액과 기본보험료는 회사가 승낙한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③ 기본보험료의 감액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자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④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감액후 기본보험료가 회사가 정한 기본보험료의 최저한도보다 작게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⑤ 기본보험료의 감액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⑥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추가설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계약자가 제6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⑧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1조 【계약자적립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① 회사는 계약체결이후 보험기간동안 분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9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9 년 10 월 2 일, 현재(계약일): 2017 년 4 월 13 일
⇒ 2017 년 4 월 13 일 - 1989 년 10 월 2 일 = **27 년 6 월 11 일 = 28 세**

제23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24조 【계약유지보장】

① "계약유지보장"이라 함은 계약자 적립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해당월의 월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② 계약자는 청약시에 제1항의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계약유지보장"의 효력이 유지되기 위하여 계약자는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이하 "최소 보험료 납입기준"이라 합니다) 하여야 하며, 다음에 부합하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기본보험료

④ 계약자가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계약유지보장 보증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항의 "최소 보험료 납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유지보장"을 하지 아니하며 "계약유지보장 보증비용"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월의 전전월까지"최소 보험료 납입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미공제된 월공제액을 사망보험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제29조(해지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에 따라 계약이 부활(효력 회복)되고 "최소 납입보험료 납입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계약유지보장 보증비용"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차감합니다.
⑦ 제2항에 따라 선택한 "계약유지보장"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된 "계약유지보장"의 재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⑧ 제3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항 제11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 【기본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기본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기본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전 알릴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고,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26조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①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보험계약일로부터 1 개월 경과 후부터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리며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제1항의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항 제8호를 따르며, 추가납입 보험료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더 이상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동조 제3항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아래 각 호의 금액(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합니다)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1. 기본보험료: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한 금액
2. 추가납입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② 제1항의 보험료에 대한 이체사유발생일 및 이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보험료

   「청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을 이체사유발생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이체사유발생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보험료납입일」을 이체사유발생일로 하며,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보험료납입일+제1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기준가격 적용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보험료:「이체사유발생일+제1영업일」
2. 추가납입보험료:「이체사유발생일+제2영업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撤回)한 경우에는 제17조(청약의 철회) 제2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8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경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제24조(계약유지보장)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므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를 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⑥ 계약자의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 상당액은「계약이 해지된 날+제1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제29조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8조(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할 때에는 미공제된 월공제액 이상의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거나 부활(효력회복) 후 바로 효력을 잃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의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자적립금상당액(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제1항의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는「이체사유발생일+제1영업일」까지, 보험료납입일이 지난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체사유발생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과 제1항의 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을 제6항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지정하는 펀드에 다시 투입합니다.

④ 제1항의 추가납입보험료 중 부활(효력회복) 승낙일까지의 미공제된 월공제액을 제6항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각 펀드에서 공제한 후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을 특별계정에 투입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이체사유발생일은 부활(효력회복) 승낙후 제1항의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는「보험료납입일」로 하며, 보험료납입일이 지난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부활(효력회복)승낙일」로 합니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기준가격 적용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효력회복)승낙후 제1항의 보험료가 완납된 경우:「보험료완납일+제2영업일」
2. 보험료납입일이 지난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부활(효력회복) 승낙일 +제1영업일」

⑦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전 알릴의무), 제1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5조(기본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을 준용합니다.

⑧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3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0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31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월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를 차감합니다.

제32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제'가'항 또는 제'나'항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부터 6개월 동안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제33조 【펀드의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합니다.

1. 채권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2. 혼합안정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 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 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50% ~ 80%로 투자하고,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20% ~ 50%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3. 혼합성장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 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 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로 투자하고,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 이상을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4. 해외혼합형: 해외투자자산[해외주식(해외주식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주식예탁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등 포함), 해외주식 관련 파생상품, 외화채권, Global전환사채, 인플레이션 연계채권 및 해외 Fund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5. 애그리비즈니스 주식형: 국내설정된 해외투자형 펀드(글로벌 농업, 수산업, 축산업과 연계된 광범위한 관련 산업(Agribusiness)의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에 순자산(NAV)의 90%이내를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단기채권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6. 유럽 주식형: 국내설정된 해외투자형 펀드(유럽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에 순자산(NAV)의 90%이내를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단기채권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7. 아시아 50 주식형: 국내설정된 해외투자형 펀드(아시아 주식시장의 대표 주식 50개 내외 종목에 주로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에 순자산(NAV)의 90%이내를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단기채권 및 유동성 자산등에 투자하는 펀드
8. 글로벌 이머징형: 국내설정된 해외투자형 펀드 (전세계 이머징 국가들에 상장 또는 등록되거나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및 채권, 현금 등에 분산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에 순자산(NAV)의 90%이내를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채권펀드,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9. 차이나 주식형: 국내 설정된 해외투자형 펀드 (중국에 설립된 기업 또는 중국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에 주로 분산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 및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에 순자산(NAV)의 90%이내를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채권펀드,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10. 주식형: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선물 거래소에 상장된 주가지수 선물 옵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개별종목 옵션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하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11. 인덱스주식형: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 KOSPI200 지수 및 구성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KOSPI200 주가지수를 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 ETF(Exchange Traded Fund)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하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12. 기후변화주식형: 국내에 설정된 해외투자형 펀드(성장잠재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세계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적인 기업 즉, 클린테크놀러지, 에너지 효율, 지구 온난화, 환경산업, 재난방지 등과 관련된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에 순자산(NAV)의 90% 이내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채권펀드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13. 이머징커머더티주식형: 국내 설정된 해외투자형 펀드(전세계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국가들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에너지 및 원자재(Commodity) 관련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여 중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에 순자산(NAV)의 90%이내를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단기 채권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14. 브이캡그로스형: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 주가지수 선물 옵션, 개별종목 옵션, ETF(Exchange Traded Fund) 등에 순자산(NAV)의 0%~100%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무위험자산(은행예금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증시상황 및 변동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결정된 전략에 따라 편입비율을 조정

15. 스마트&세이프 코스피원자재형: 국내 주식 및 원자재 관련 집합투자기구에 순자산의 8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국내 주식 및 원자재 관련 집합투자기구"란 KOSPI200지수와 원자재지수(에너지, 금속, 농산물 등을 포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과 채권, 채권관련 수익증권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펀드이며, "적립금자동보존전략(Daily Preservation)"에 의해 운용기간 중 해당 장외 파생상품에서는 위험자산의 가격 변화와 수익률 변동성 및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비율을 조정하는 투자전략을 활용합니다. 이때, 위험자산(KOSPI200지수와 원자재지수 등)의 투자비율은 0% 이상 90% 이하로 합니다. 이 펀드에서 "적립금자동보존전략(Daily Preservation)"이란 계약시점부터 매일 기존까지의 적립금 중 최고치의 80%(Preservation Level)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적으로 보존(Preserve)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투자전략으로써, 보장되는 금액은 아니며, 운용결과 80%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6. 스마트&세이프 코스피항셍형: "국내주식 및 중국에 설립된 기업 또는 중국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 관련 집합투자기구"에 순자산의 8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국내주식 및 중국에 설립된 기업 또는 중국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 관련 집합투자기구"란 KOSPI200지수와 HSCEI(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항셍차이나엔터프라이즈인덱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상품과 채권, 채권관련 수익증권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펀드이며, "적립금자동보존전략(Daily Preservation)"에 의해 운용기간 중 해당 장외 파생상품에서는 위험자산의 가격 변화와 수익률 변동성 및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비율을 조정하는 투자전략을 활용합니다. 이때, 위험자산(KOSPI200지수와 HSCEI 등)의 투자비율은 0% 이상 90% 이하로 합니다. 이 펀드에서 "적립금자동보존전략(Daily Preservation)"이란 계약시점부터 매일 기존까지의 적립금 중 최고치의 80%(Preservation Level)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적으로 보존(Preserve)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투자전략으로써, 보장되는 금액은 아니며, 운용결과 80%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7. 삼성그룹주형: 삼성그룹관련 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ETF 포함), 주식선물, 지수선물 등에 NAV의 60~100%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과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18. 동남아시아형: 국내 설정된 해외투자형 펀드(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에 순자산(NAV)의 60~95%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단기 채권,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19. 해외혼합&시니어론: 국내외에 설정된 해외투자형 펀드(글로벌 우량채권, 시니어론, 글로벌 고배당주, 하이일드 채권, 기타 대안투자 등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및 수익증권)에 순자산(NAV)의 60~95%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20. 밸류고배당주식형: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고배당주식 및 고배당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 주가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21. 미국주식형: 국내외에 설정된 해외투자형 펀드(미국에 설립된 회사 또는 매출의 상당한 부분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을 추구)에 순자산(NAV)의 60~95%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 자산과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② 제1항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재조정합니다.

③ 제1항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 중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34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시 제33조(펀드의 유형)에서 규정한 펀드 중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펀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선택한 펀드 유형별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투

입비율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은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따릅니다.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설정한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41조(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연 4회 초과시에 한하여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적립금의 0.1% 이내 또는 2,000원 중 작은 금액을 펀드변경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현금을 이전할 때 공제합니다.

제35조 【계약자의 초과적립금 자동이전 선택】

①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난 날부터 제36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에서 정하는 펀드자동재배분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초과적립금 자동이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 분기(1~3월, 4~6월, 7~9월, 10~12월) 첫째 영업일의 특별계정 계약자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에 도달하고 초과적립금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적립금은 매 분기 첫째 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채권형 펀드로 자동 이전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초과적립금이란 계약자 적립금 합계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단,'0'이상의 금액으로 한다)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각 펀드에서 이전되는 초과적립금은 매분기 첫째 영업일의 특별계정 적립금 비율로 계산합니다.

④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초과적립금 자동이전을 연간 4회에 한하여 「매 분기 첫째 영업일-제2영업일」 전까지 신청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계약자의 펀드 자동재배분 선택】

①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난 날부터 제35조(계약자의 초과적립금 자동이전 선택)에서 정하는 초과적립금 자동이전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펀드 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매 분기(1~3월, 4~6월, 7~9월, 10~12월) 첫째 영업일에 투입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됩니다.

② 보험기간 중 투입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자동재배분 됩니다.

③ 회사가 펀드자동재배분 요청을 받은 경우 매 분기 첫째 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④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펀드자동재배분을 연간 4회에 한하여 「매 분기 첫째 영업일-제2영업일」전까지 신청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①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제38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

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단,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39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8 조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 265 조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40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1조 【특별계정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특별계정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순자산가치가 50억 미만인 경우
3. 특별계정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순자산가치가 50억 미만인 경우
4.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34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펀드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제42조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7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4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6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9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6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4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시】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6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4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46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6조 【해지환급금】

① 제28조(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제1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③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④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7조 【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년36회(스

마트플랜서비스로 인한 인출 제외)에 한하여 특별계정 내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월계약해당일 기준 1개월 동안 3회(스마트플랜서비스로 인한 인출 제외)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출 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은 300만원과 기본보험료의 10%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험년도】
당해년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년도를 말합니다.

②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③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연 4회(스마트플랜서비스로 인한 중도인출 포함) 초과시에 한하여 인출금액의 0.1%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을 인출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인출수수료를 포함한 인출금액은 「인출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자적립금 인출의 최고한도는 인출시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중도인출하는 경우 각 중도인출시점까지의 중도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과 스마트플랜서비스 인출금액의 합계) 총합계는 계약자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도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중도인출이 이루어진 경우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은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장래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중도인출이 이루어진 경우 인출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합니다.

$$\text{인출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left(1 - \frac{\text{중도인출금액(수수료 포함)}}{\text{인출전 계약자적립금}}\right)$$

⑦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 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스마트플랜서비스】

① 스마트플랜서비스라 함은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주기로 정해진 금액만큼 중도인출을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계약자는 스마트플랜서비스를 회사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승낙 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유효한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2. 1회 지급시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매회 지급금액은 동일합니다.
3. 스마트플랜서비스 기간은 최초 지급이 발생한 이후 최소 1년 이상 지정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스마트플랜서비스의 최고한도는 인출시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스마트플랜서비스로 인해 특별계정내 계약자 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연 4회 초과시에 한하여 인출금액의 0.1%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을 매회 인출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인출수수료를 포함한 인출금액은 「인출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⑤ 다음 각 호 중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마트플랜서비스를 중지합니다. 단, 2호 또는 3호의 경우 이를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가 스마트플랜서비스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스마트플랜서비스 인출금액이 인출시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인출 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과 기본보험료의 10% 중 큰 금액 미만인 경우
3.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과 스마트플랜서비스 인출금액의 합계) 총합계가 계약자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인출이 이루어진 경우 인출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합니다.

스마트플랜서비스로 인한 인출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left(1 - \frac{\text{스마트플랜서비스로 인한 인출금액(수수료 포함)}}{\text{인출전 계약자적립금}}\right)$$

⑦ 스마트플랜서비스 이용 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 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49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8조(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고,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차감하여 정한 이율」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단, 계약자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험기간중에 상환이 있는 경우 상환액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 제외하고, 상환일로부터 「상환일+제1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한 후 「상환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차감하여 정한 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차감하여 정한 이율]는 시중의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계약자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마다 공표되는 변동이율체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자산운용수익율・지표금리・향후운용수익율 예측분을 혼합하여 산출하기도 합니다.

제50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제51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소멸시효】

①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예시】
>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5 년 1 월 1 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54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56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57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58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9조 【예금보험에 따른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계약에서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부가된 특약에 한하여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보험금지급기준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주)

1. 계약자적립금은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금을 말하여,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2.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항 제11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4.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항 제15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험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5. 보험가입금액은 기본보험료를 말합니다.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보험금을 지급할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사망보험금 (제3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 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 일이후부터 60 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 일이후부터 90 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 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해지환급금 (제46조 제1항)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46조 제2항)	「해지환급금 청구일+제2영업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3）재해분류표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